신탁업자 지정 동의서

l. 농의자 현황 (앞 취									
인 적 사 항	성 명					생년	크월일		
	주민등록상 주 소					전호	화번 호		
관 아 소 현	토 지 (총 필지)		소	재 지(공	¦유 여부)				면적(m²)
					()		
					()		
					()		
	건 축 물		소	재 지(허	가 유무)				동 수
					()		
					()		
					()		
	지 상 권	설 정 토 지					지상권의 내용		
	(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								
	권리를 말합니다)								
Ⅱ. 동	의 내용								
1. 신택	탁업자 현황	1							
명 칭		법인등록번호							
대표자		주된 사무소 전화번호							
주	된 사무소 소재지								
2. 정비	비사업 내용								
가. 신축건축물의		대지 면적 (공부상 면적)		건축 연면적		규 모		비고	
설기	계개요		m²		m²				
나. 공	당사비 등 정비 업에 드는 비용	철거비	거비 (신탁보수		그 밖의	비용	합 계
사유									

다.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

- 1)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,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, 신탁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.
- 2)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.
- 3)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(예시)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=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- (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× 비례율*)
 - * 비례율 = (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총사업비) /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

라.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

※ 개별 정비사업의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. 다만,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.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면적별 배분의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.

3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|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・군수등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・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

4. 시행규정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된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,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.

5. 신탁계약

)재개발사업·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의 신탁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 동의서에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)과 사업이 취소·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 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으며, 신탁계약에 동의합니다.

※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본인은 ()재개발사업・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> 일 년 웤

위 동의자 : (자필로 이름을 써넣음) 지장날인

추진위원회 • 조합 • 신탁회사 귀중 (

신청인 제출서류

1.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.

수수료 없음